

의안번호	2217975
의 퇴 인	김태선의원
회 답 일	2026. 7. 15.
추계번호	26B1881
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 (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1항) 1. 제9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.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우선 구매 3.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홍보 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 (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이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행법 제6조에¹⁾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－ 동법 시행령 제14조²⁾에 따른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친환경선박 및

1) 제6조(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2) 제14조(업무의 위탁)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「한국해

관련 기자재를 대상으로 친환경 연료의 사용 여부, 기술적 난이도,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증등급(1~5등급)을 부여하고 있으며, 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선박 보유자 등은 취득세 경감(최대 2%p), 국고보조금 지원(선가의 최대 30%), 선박금융 금리 우대(최대 1.5%p)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될 구체적인 사업의 대상 및 지원 규모·방법·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에서는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

「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